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9 차 교 육 위 원 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22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2
2. 개정안 부칙	14
[참고자료]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24.

3. 회부연월일 : 2025.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레벨 테스트가 확산되는 등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과외교습”이란 <u>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u>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유아교육법</u> 」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이하 “유아”라 한다)와 <u>초등학교</u> ----- ----- ----- ----- ----- ----- -----.

가. ~ 다. (생략)

5.·6. (생략)

<신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7. ~ 12. (생략)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가. ~ 다.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7. ~ 12. (현행과 같음)

② -----

-----.
-----제1호의
2에-----
-----.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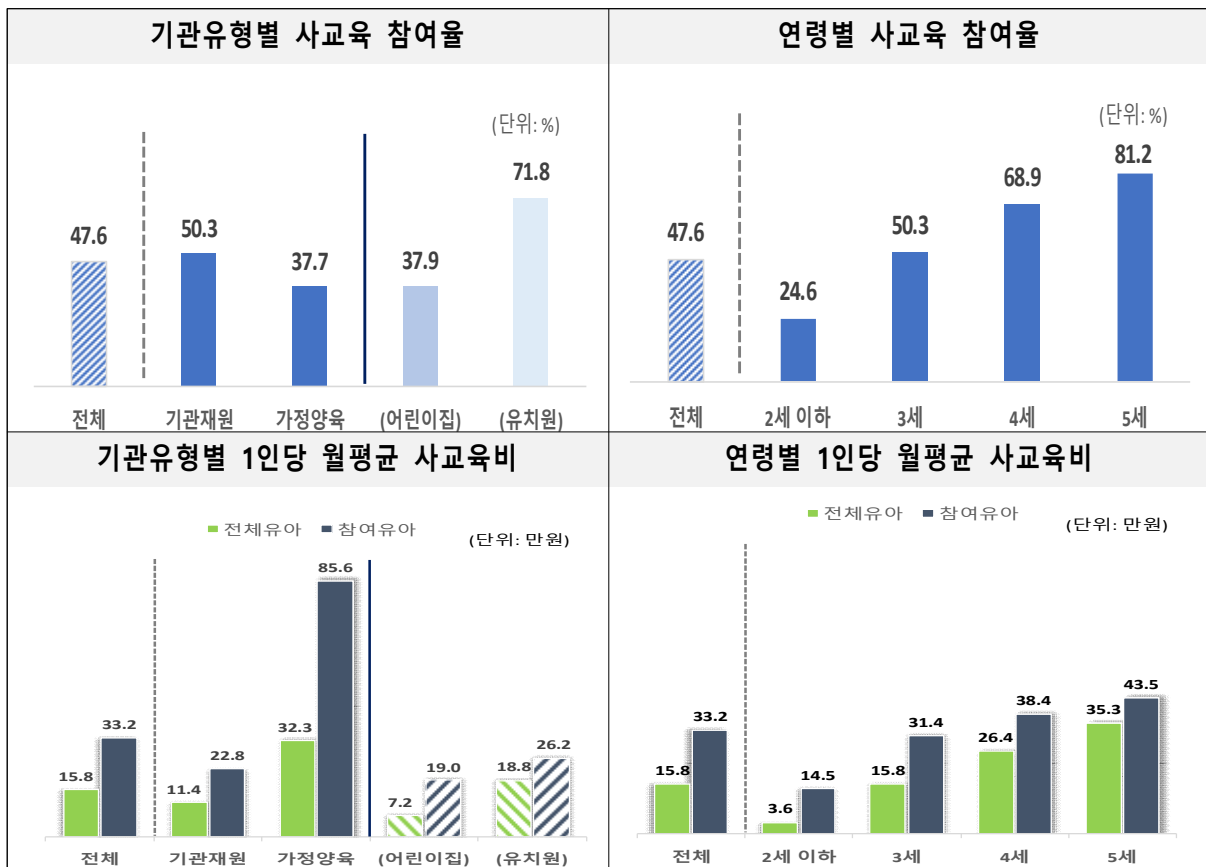
1. (생략) 2. ~ 7. (생략)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u><신설></u> 1. (생략) 2. ~ 6. (생략) ④ (생략)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u><신설></u> 3. ~ 10. (생략) ② (생략)	<u>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u>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③ ----- ----- ----- ----- -. -----제1호의2에----- ----- -----.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① ----- -----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3.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 교육부가 실시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유아 기준 15만 8천원, 참여유아 기준 33만 2천원으로 조사됨.

이와 함께 반일제 영어학원이나 유명 선행학습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을 지칭하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는 등 유아대상의 사교육 과열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임.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 자료: 교육부

한편,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를 띤 조기 사교육 해소와 모든 아동이 건강권과 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나 지침 마련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도 있음.¹⁾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25.9.5.)한 바 있음.²⁾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25년 9월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하여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를 시작하였고, 학원업무담당자 간담회(’25.10.21.)를 통해 학원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확보 및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등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함.

1)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7세 고시·선행 사교육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멈춰야”, 2025. 8. 25.자 참고

[25진정0268600 ‘7세 고시’에 따른 아동 인권침해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관리·감독 소홀]

(주문) 교육부장관에게,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를 띤 조기 사교육 해소와 이를 통한 모든 아동이 건강권과 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하여, △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나 지침 등 마련, △ 외국어 교육 숙달을 목표로 영유아에게 별도의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할 조치 마련, △ 놀이·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2025.9.5. 자 참고

□ 그러나, 학원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 시험이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교육 저연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유아 대상의 사교육 과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의 중요성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동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권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내용에 있어서 살펴보면, 개정안은 제2조제4호 “과외교습”의 정의에서 과외교습의 대상으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에 미규정된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대상으로 유아를 명시함으로써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도 유아대상 교습을 관리·감독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참고로 현행법은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즉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³⁾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원법에 따른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상당수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교육부의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사교육 참여율은 각각 3세 50.3%, 4세 68.9%, 5세 81.2% 수준이고 사교육비 총액은 3세 1,325억원, 4세 2,452억원, 5세 3,519억원 수준임.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교육비 이용 총액 및 참여율]

(단위: 억원, 만명, %)

구분	전체	기관유형별				연령별			
		기관			가정 양육	2세 이하	3세	4세	5세
		재원	야간집	유치원					
사교육비 총액(억원)	8,154	4,671	1,869	2,802	3,483	858	1,325	2,452	3,519
유아수(만명)	172.1	136.2	86.3	49.8	36.0	80.1	27.9	30.9	33.2
참여율(%)	47.6	50.3	37.9	71.8	37.7	24.6	50.3	68.9	81.2
참여 시간	전체	2.7	1.8	1.1	3.1	5.7	0.5	2.6	4.4
	참여	5.6	3.7	2.9	4.3	15.2	1.8	5.2	6.4

* 자료: 교육부(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 반면, 개정안은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를 신설하여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의 실시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는 학원 등에 대하여 교습비 초과징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 광고 등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학습자의 모집이나 반 편성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의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제재 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는 ①학습자 모집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⁴⁾와 ②수준별 배정을 목

4)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시험’은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을 뜻하고, ‘평가’는 ‘어떤 대상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헤아려 정함. 또는 그 가치나 수준’을 의미함

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모집 목적 시험’은 등록 확정 이전에 ‘선발(합격·불합격)’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은 등록 확정 이후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진단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험으로 구분됨.

우선 안 제12조의2의 ①학습자 모집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할 수 있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권리보호 증진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한국학원총연합회(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에서도 영유아 대상 선발·서열화에 초점을 맞춘 입학시험의 전면 폐지를 선언하는 등 자정 노력 의지를 밝힌 바도 있어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임.⁵⁾

□ 다만, 개정안의 ②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취지는 현실적으로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인 유아도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⁶⁾,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이 허용된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반을 배정받기 위한 과도한 수준의 조기 사교육을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5) 보도자료, “한국학원총연합회, 영유아·초등 대상 입학시험 전면 금지 재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2025.9.5.자 참고

6)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참고

그러나, 안 제12조의2의 ②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는 ‘학습 수준에 맞는 수업을 위한 진단’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개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인 학습권⁷⁾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둔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⁸⁾과의 조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는 지필시험(독해, 작문 등) 외에도 그룹 인터뷰(지문·영상을 보고 질문에 답하기, 게임 등), 구술, 관찰,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①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으면서 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③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가장 적은 방

[판결요지]

[1] (생략) 즉,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은 위와 같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는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가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인지 여부나 학교교육의 단계가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 과정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

[2]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은 비록 그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독자적으로 가진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범위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이라는 내재적인 한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이 부모의 교육권에 포함될 뿐 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7)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8) 「법제기준과 실제」(2024년 개정증보판), 2024년 5월, 국회사무처 법제실, p. 48-49 참고

법을 선택해야 하고(피해의 최소화), ④ 입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 균형이 유지(법익의 균형성)되어야 함을 의미함.

- 아울러, 법 체계적으로는 현행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및 [별표 2]⁹⁾에서 학교교과교습과정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있고, 현행규정과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국제화와 예능 분야 등에서 교습과정을 주로 운영할 것이므로 각 분야별로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의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교습과정별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기준: '24. 12월말, 단위: 개소, 명)

구분		입시·검정 및 보습	전문입시 컨설팅	국제화	예능	독서 실	정보	특수 교육	기타	종합	직업 기술	인문 사회	기예	계
학원	학교교과 교습학원	49,826	169	6,428	21,125	2,176	113	12	2,502	3,379	0	0	0	85,730
	평생직업 교육학원	0	0	524	0	376	0	0	0	592	4,215	509	2,329	8,545
	소계	49,826	169	6,952	21,125	2,552	113	12	2,502	3,971	4,215	509	2,329	94,275
교 습 소		24,423	0	1,868	15,408	0	59	21	1,000	0	0	0	0	42,779
개인과외교습자		122,152	0	5,086	20,431	0	0	8	2,563	0	0	0	0	150,240
계		246,227	338	20,858	78,089	5,104	285	53	8,567	7,942	8,430	1,018	4,658	287,076

* 자료: 교육부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제1항 관련) 중 학교교과교습과정

분야	계열	교습과정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 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유아 대상 ‘모집 목적 시험’을 금지하는 것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습권·교육 선택권 침해, 교육 효율 저하, 과잉규제 논란 등 쟁점을 수반할 수 있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어 일부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시도교육청은 ‘4·7세 고시’로 사회적 논란이 있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대구)과 개정안에 동의하고 반일제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 및 선발·배정 시험이 일반화된 상황이므로 교육기관 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경남)을 제시함.

한국학원총연합회(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모집 목적 시험’을 제한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 금지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임.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17조(행정처분) 및 제23조(과태료)에서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지를 명하거나 교습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새로 시행되는 법률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둘 필요도 있음.¹⁰⁾

문 의 처
02)6788-5192

10) 안 부칙 수정의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 1

2025년 유아 대상 영어학원 조사 및 조치 결과(교육부)

○ 적발건수 : 728개 학원, 384건 적발

지역	점검 학원수	적발 학원수	적발 건수	조치결과(건수)						
				소계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천원)	
									건수	금액
서울	219	52	71	64	0	1	46	5	12	8,800
부산	50	20	23	24	0	1	22	0	1	200
대구	37	11	17	21	0	0	15	2	4	1,050
인천	31	14	25	25	0	0	6	19	0	0
광주	18	6	6	7	0	0	6	0	1	500
대전	16	6	6	6	0	0	6	0	0	0
울산	24	12	14	24	0	0	14	0	10	6,600
세종	9	3	3	3	0	0	3	0	0	0
경기	244	111	183	219	0	10	111	62	36	19,400
강원	7	1	2	0	0	0	0	0	0	0
충북	8	0	0	0	0	0	0	0	0	0
충남	12	5	12	14	0	2	4	6	2	1,050
전북	5	0	0	0	0	0	0	0	0	0
전남	5	1	1	1	0	0	0	1	0	0
경북	3	1	1	1	0	0	1	0	0	0
경남	26	7	9	13	0	0	9	0	4	2,800
제주	14	10	11	11	0	0	5	6	0	0
계	728	260	384	433	0	14	248	101	70	40,400

○ 위반사유별 현황

지역	외국인 강사 채용 위반	교습비등		등록외 교습 과정 운영	광고 명칭 미게시	시 등 거짓, 과대 광고	학원 명칭 표시 위반	시설 위반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	성범죄등 경력 미조회	제장부 관리 소홀	기 타	계
		초과 징수 등	게시 위반										
서울	0	13	21	0	2	6	6	13	5	1	2	2	71
부산	0	1	1	0	5	5	4	6	0	0	0	1	23
대구	0	0	4	1	2	7	3	0	0	0	0	0	17
인천	0	2	1	11	3	4	1	0	0	0	0	3	25
광주	0	2	1	0	0	0	1	0	0	0	0	2	6
대전	0	0	0	0	1	4	1	0	0	0	0	0	6
울산	0	4	5	1	0	0	4	0	0	0	0	0	14
세종	0	0	0	0	0	2	0	0	0	0	0	1	3
경기	0	28	25	9	23	26	33	5	10	0	2	22	183
강원	0	0	0	0	1	1	0	0	0	0	0	0	2
충북	0	0	0	0	0	0	0	0	0	0	0	0	0
충남	0	2	0	0	2	0	3	1	0	0	1	3	12
전북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0	0	1	1
경북	0	0	0	0	0	0	0	0	1	0	0	0	1
경남	0	1	3	0	1	2	0	0	1	1	0	0	9
제주	0	0	0	0	6	5	0	0	0	0	0	0	11
계	0	53	61	22	46	62	56	25	17	2	5	35	384

* 자료: 교육부